##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8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춘석・박홍배・한병도

윤준병 · 장철민 · 김윤덕

정준호 · 정동영 · 이연희

박홍근 • 임미애 • 이원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 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제41조제1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을</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lt;신 설&gt;</u>	<u>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1</u>
	천만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
	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
	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u>자</u>
<u>1.</u> ~ <u>6.</u> (생 략)	$2. \sim 7.$ (현행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2. ~ 6.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2. ~ 6. (생략)

④·⑤ (생 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2. ~ 6. (현행과 같음)
-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1. (현행과 같음)
  - 2.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
    00만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한 자
  - 3. ~ <u>7.</u> (현행 제2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